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 등 경영 투명성과 직결된 중요 서류를 구의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구의회의 실효성 있는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33조의 제목을 “(구의회 보고)” 에서 “(구의회 보고 등)” 으로 변경하고 현행 내용을 제1항으로 조정함(안 제33조)

나.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의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를 지체 없이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서류 제출 의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의회사무과
- 전화 : 02)3396-8157 팩스 : 02)3396-9055
- E-mail : ycr7607@junggu.seoul.kr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 윤 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발의연월일 : 2026. 8. 20.

발 의 자 : 최 윤 성 의원 외 2명

(양은미 의원, 손주하 의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 등 경영 투명성과 직결된 중요 서류를 구의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구의회 의 실효성 있는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33조의 제목을 “(구의회 보고)”에서 “(구의회 보고 등)”으로 변경하고 현행 내용을 제1항으로 조정함(안 제33조)
- 나.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의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를 지체 없이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서류 제출 의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구의회 보고)”를 “(구의회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서류(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를 지체 없이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u>구의회 보고</u>) (생 략) <u><신 설></u>	제33조(<u>구의회 보고 등</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구청장은 제5조제2항, 제28</u> <u>조 및 제29조에 따른 서류(정관,</u> <u>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u> <u>를 말한다)를 지체 없이 구의회</u> <u>에 제출하여야 한다.</u>